#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주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66

발의연월일: 2020. 7. 6.

발 의 자: 김주영·신정훈·권칠승

이병훈 · 김정호 · 김홍걸

윤영덕 · 김승원 · 문진석

박영순 · 김경협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

바람직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, 현행법상 주주대표소송과 관련하여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 제도개선에 대한 필 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따라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표소송제도를 활성화하고, 이 중대표소송을 도입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경영을 도모하려는 것임.

### 주요내용

- 가.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을 강화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것임(안 제400조제2항).
- 나. 단독주주도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단독주주권으로 규정하

- 여 원고적격을 확대하고, 주주대표소송 계속 중에 주식교환, 주식이전 또는 합병 등의 경우에도 원고적격이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임 (안 제403조).
- 다.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 회사는 이를 주주에게 공고하도록 하고, 이를 통해 주주대표소송의 원고 주주 이외의 다른 주주들도 대표소송의 원고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,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주주들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04조제3항 신설).
- 라.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05조제1항).
- 마.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회계장부 열람권, 검사인 선임청구권, 이사회회의록 열람권 등을 보장하여 회사에 대한 정보수집 및 주주 의 정보권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405조제3항 신설).
- 바.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대표소송을 도입하려는 것임(안 제406조의2신설).

### 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4조 중 "제400조와 제403조 내지 제406조"를 "제400조, 제403조부 터 제406조까지 및 제406조의2"로 한다.

제394조제1항 후단 중 "제403조제1항"을 "제403조제1항 또는 제406조의2제1항"으로 한다.

제40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법원은 의무위반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.

제40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399조·제401조 및 제403조"를 "제399조·제401조·제403조 및 제406조의2"로 한다.

제403조제1항 중 "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"를 "해당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"로 하고, 같은 조제3항 중 "있다"를 "있고, 회사는 제1항의 주주에게 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"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미만으로 감소한 경우(發行株式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)에도"를 "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

가 제소 후 주식의 포괄적 교환, 포괄적 이전, 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주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"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"제176조제3항, 제4항과 제186조"를 "제186조"로 한다.

제40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가 회사에 의하여 제기되거나 제403조 제3항과 제4항의 소가 제기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이를 주주에 게 공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403조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주주 는 위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.

제405조제1항 전단 중 "비용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" 를 "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"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"소송비용을"을 "원고주주가 변호사비용을 지급하기 전에도 회사에 상환청구가 가능하고, 대표소송 변호사에게 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 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, 소송비용을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신설한다.

③ 제403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소를 제기한 주주는 회사의 회계 장부 열람권과 검사인 선임청구권, 이사회의사록 열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제40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06조의2(이중대표소송) ① 모회사의 발행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 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.

- ② 제176조제3항·제4항, 제40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, 제404조부터 제406조까지, 제407조 및 제408조의 규정은 본조의 소에 준용한다.
- ③ 제1항의 소의 제기를 청구한 후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보유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.
- ④ 본조의 소는 자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 다.

제408조의9 중 "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"를 "제402조부터 제406조까지, 제406조의2, 제407조, 제408조"로 한다.

제415조 중 "제401조와 제403조 내지 제407조"를 "제401조, 제403조부 터 제406조까지, 제406조의2 및 제407조"로 한다.

제424조의2제2항 중 "제403조 내지 제406조"를 "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및 제406조의2"로 한다.

제467조의2제4항 중 "제403조 내지 제406조"를 "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및 제406조의2"로 한다.

제542조제2항 중 "제398조 내지 제408조"를 "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, 제406조의2, 제407조, 제408조"로 한다.

제542조의6제6항 중 "제403조"를 "제403조 및 제406조의2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아 정 제324조(발기인의 책임면제, 주주 | 제324조(발기인의 책임면제, 주주 의 대표소송) 제400조와 제403 | 의 대표소송) 제400조, 제403조 부터 제406조까지 및 제406조 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 발 기인에 준용한다. 의2----제394조(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제394조(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) ① 회사가 이사에 관한 대표) ① -----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 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. 회사가 제403조제1항 -----제403조제1항 의 청구를 받음에 있어서도 같 또는 제406조의2제1항-----다.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제400조(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 제400조(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 면) ① (현행과 같음) 면) ① (생 략) ②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 ② 법원은 의무위반의 내용 및 에 따라 제399조에 따른 이사 정도를 고려하여 제399조에 따 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른 이사의 책임을 감경할 수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 있다. 액(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 다)의 6배(사외이사의 경우는 3

배)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. 다만,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 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.

제401조의2(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)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·제401조 및 제403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이사로 본다.

1. ~ 3. (생략)

② (생 략)

제403조(주주의 대표소송) ① <u>발</u> <u>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이</u> <u>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</u> <u>주</u>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 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 할 수 있다.

- ② (생략)
- ③ 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를 제기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

.a	
	01조의2(업무집행지시자 등의
Ž	백임) ①
-	
_	제399조·제4
0	1조·제403조 및 제406조의2
_	
1	. ~ 3. (현행과 같음)
(	② (현행과 같음)
제4	03조(주주의 대표소송) ① <u>해</u>
Į.	당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
_	
_	
_	<u>.</u>
	•
(°	② (현행과 같음)
	3)
(e	))
_	
_	
-	

를 제기할 수 있다.

- ④ (생략)
- ⑤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 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미만 으로 감소한 경우(發行株式을 |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)에도 제소의 효력에 는 영향이 없다.
- ⑥ (생략)
- 6조의 규정은 본조의 소에 준 용한다.
- 송고지) ①·② (생 략) <신 설>

-----있고, 회사는 제1 항의 주주에게 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를 지체 없이 서면으 로 통지하여야 한다.

- ④ (현행과 같음)
- ⑤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 한 주주가 제소 후 주식의 포 괄적 교환, 포괄적 이전, 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주주의 자 격을 상실한 경우에도-----
  - ⑥ (현행과 같음)

제404조(대표소송과 소송참가, 소 제404조(대표소송과 소송참가, 소 송고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가 회사에 의하여 제기되거나 제4 03조제3항과 제4항의 소가 제 기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이를 주주에게 공고하여야 한 다. 이 경우 제403조의 소를 제 기할 수 있는 주주는 위 소송 에 참가할 수 있다.

제405조(제소주주의 권리의무) ① 제403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때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소송비용을 지급한 회사는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.

② (생 략)<신 설>

<신 설>

세405조(제소수수의 권리의무) ①
<u>a</u> J
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
원고주주가 변호사비
용을 지급하기 전에도 회사에
상환청구가 가능하고, 대표소송
변호사에게 회사에 대한 직접적
인 비용 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
<u>으며, 소송비용을</u>
,
·

- ② (현행과 같음)
- ③ 제403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소를 제기한 주주는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권과 검사인 선임청구권, 이사회의사록 열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제406조의2(이중대표소송) ① 모 회사의 발행주식을 가진 주주 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 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

제408조의9(준용규정) 집행임원에 제대하여는 제382조의3, 제382조의4, 제396조, 제397조, 제397조의2, 제398조, 제400조, 제401조의2,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, 제412조 및 제412조의2를 준용한다.

를 청구할 수 있다. ② 제176조제3항·제4항, 제403 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, 제404 조부터 제406조까지, 제407조 및 제408조의 규정은 본조의 소에 준용한다. ③ 제1항의 소의 제기를 청구 한 후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보유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 0분의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 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. ④ 본조의 소는 자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. 제408조의9(준용규정) -----------제402조부터 제406조 까지, 제406조의2, 제407조, 제40 -----제401조, <u>제403</u>조 내지 <u>제407</u>조의 규정 <u>제403</u>조부터 <u>제406</u>조까지, <u>제40</u> 은 감사에 준용한다. 6조의2 및 제407조-----

- 제424조의2(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) ① (생 략)
  - ② <u>제403</u>조 내지 <u>제406</u>조의 규정은 제1항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  - ③ (생략)
- 제467조의2(이익공여의 금지) ① ~ ③ (생 략)
  - ④ <u>제403</u>조 내지 <u>제406</u>조의 규정은 제3항의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.

제542조(준용규정) ① (생 략)

② 제362조, 제363조의2, 제366 조, 제367조, 제373조, 제376조, 제377조, 제382조제2항, 제386 조, 제388조 내지 제394조, 제3 96조, <u>제398조 내지 제408조</u>, 제411조 내지 제413조, 제414조 제3항, 제449조제3항, 제450조

<u>6조의2 및 제407조</u>
제424조의2(불공정한 가액으로
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) ①
(현행과 같음)
②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
및 제406조의2
<u>.</u>
③ (현행과 같음)
제467조의2(이익공여의 금지) ①
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
및 제406조의2
제542조(준용규정) ① (현행과 같
<u>ㅇ</u> )
②
제398조부터 제406
조까지, 제406조의2, 제407조,
_
제408조

와 제466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준용한다. 제542조의6(소수주주권) ① ~ ⑤ 제542조의6(소수주주권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(생략) ⑥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 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 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3조(제324조, -----제403조 및 406조의2 제408조의9, 제415조, 제424조 의2,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 ⑦·⑧ (생 략) ⑦·⑧ (현행과 같음)